

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

제 호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8조의7제10항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(담당자:

(연락처:

년 월 일

)

)